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3년 12월 12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법무부장관 한동훈

●대통령령 제33917호

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시험일시, 시험장소, 시험방법, 시험과목, 응시자격, 출원절차,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”을 “시험의 일시·장소·방법·과목, 응시자격, 응시원서 접수절차, 합격자 공고의 일시 및 방법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본문 중 “출원기간”을 “응시원서 접수기간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응시 수수료의 전부

2.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: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

⑤ 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

2. 본인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진찰·치료·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

3.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·외조부모·형제자매·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한 경우
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응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

기산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변호사시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를, 같은 사유로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응시 수수료의 반환 사유·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, “출원기간”을 “응시원서 접수기간”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